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철도법령 달달 암기노트&OX퀴즈 476제 60p 번호 : 54	정답	X	O
		수정 사유	정답 오류
철도법령 달달 암기노트&OX퀴즈 476제 78p [법 제48조] 위	문제-본문	없음	<p>[법 제47조 2] 정보 제공 요청</p> <p>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법인·단체의 장, 개인에게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성명,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 등 인적사항</p> <p>2. 승차권 구매이력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[2025. 1. 21. 신설 및 시행]</p>
		수정 사유	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철도법령 달달 암기노트&OX퀴즈 476제 85p	문제-본문	[제3조]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가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새로이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이미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[제4조] 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,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.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. [제5조] 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,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 [제6조] 대리·대행인의 선임등기 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에 갈음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(이하 "대행인"이라 한다)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·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대리·대행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·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.	[제3조]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,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 [2025. 1. 21. 신설, 2025.1. 31. 시행] [제4조] 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 ②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 [2025. 1. 21. 신설, 2025.1. 31. 시행] [제5조] 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(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 [2025. 1. 21. 신설, 2025.1. 31. 시행] [제6조] 대리·대행인의 선임등기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(이하 "대행인"이라 한다)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·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. [2025. 1. 21. 신설, 2025.1. 31. 시행]
		수정 사유	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
철도법령 달달 암기노트&OX퀴즈 476제 94p 번호 : 13	문제-문항	공사가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.	공사가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
		수정 사유	법령 개정에 따른 문제 수정
철도법령 달달 암기노트&OX퀴즈 476제 94p 번호 : 14	문제-문항	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.	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
		수정 사유	법령 개정에 따른 문제 수정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철도법령 달달 암기노트&OX퀴즈 476제 94p 번호 : 15	문제-문항	공사는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,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	공사는 설립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
		수정 사유	법령 개정에 따른 문제 수정
철도법령 달달 암기노트&OX퀴즈 476제 94p 번호 : 17	문제-문항	공사의 사장이 사장에 갈음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·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대리·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.	공사는 사장이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·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해야 한다.
		수정 사유	법령 개정에 따른 문제 수정
철도법령 달달 암기노트&OX퀴즈 476제 94p 번호 : 18	문제-문항	대리·대행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·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.	대리·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.
		수정 사유	법령 개정에 따른 문제 수정

일부 정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
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